

**2009년도
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**

2009. 7. 13

**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운영위원회**

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(운영위원회)

1. 감사의 목적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 마포구의회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,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이를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2010년도 예산심의에 활용하는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
2. 감사기간

○ 2009. 6. 23(화) ~ 2009. 6. 29(월) [7일간]

3. 감사실시 대상기관

○ 마포구의회 사무국

4. 감사실시 경과

가. 감사반 편성

| 구 분 | 감 사 위 원 | 대상기관 | 감사장소 | 전문위원 | 사무직원 |
|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운 영 위원회 | [위원장] 이진환 [간 사] 천민식 [위 원] 김영신, 김용갑, 유응봉 윤동현, 채재선 | 마포구의회 사 무 국 | 운 영 위원회실 | 이국환 | 이천구 |

나. 감사일정 및 장소

| 일 자 | 감사대상 부서 | 감사장소 | 감 사 방 법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2009. 6. 24(수) | 마포구의회 사무국 | 운 영 위원회실 | 증인선서 업무보고 및 질의·답변 | |

5. 주요감사 실시내용

- 2008년도 예산집행내역
- 공용차량 운행 등 관리실태
-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원 출결현황 관리실태

6. 감사결과 처리의견

가.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

- 현재 의장 전용차량의 경우 공휴일에 사전 결재 없이 공적인 사무와 무관한 용도로 운행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공용차량관리규정(대통령령 제19414호)에 위반되는 것이니 사무국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.
- 마포구의회 제5대 출범 이후 지난 5월 제145회 임시회까지 상임 위원회는 물론 본회의에도 여러 번 불참한 의원이 다수 있음에도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의원은 두명 뿐임.
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이 성실히 회의에 참석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청가서와 결석계에 관한 관련규정을 안내하고 2회 이상 미출석하는 의원에게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의원 출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.

나. 처리의견

-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사무국장이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9년 8월 11일 까지 의장(운영위원장)에게 보고도록 하고자 함.

붙 임 :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(보고용) 1부. 끝.

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

【 운영위원회 】

1.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

| 연번 |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| 시정 및 처리 결과 | 처리부서 |
|----|---|------------|------|
| 1 | 현재 의장 전용차량의 경우 공휴일에 사전 결재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되는 등 공용차량관리규정(대통령령 제19414호)을 위반하고 있으니 사무국에서는 향후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| | |
| 2 | 마포구의회 제5대 출범 이후 지난 5월 제145회 임시회까지 본회의 등 회의에 여러 번 불참한 의원이 다수 있음에도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의원은 두명 뿐임. 사무국에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원들이 성실히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2회 이상 미출석한 의원에게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출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. | | |